

할 수도 있을 것으로 예측되므로, 청원인이 요구하는 상업지역 지정은 도시계획법상 개별적 처리는 어려우리라 사료됨. 그러나 청원지역은 신촌 부도심주변 역세권 개발계획 예정지역으로서, 도시기본계획 변경시 반영되도록 서울시 및 건설부등에 건의 요청하는 방안을 강구함이 필요하다고 사료됨.

5. 질의답변요지

가. 질의요지(전병만 위원)

마포구의 상업지역은 전체의 몇%이며, 향후 상업지역을 늘릴계획은 없는지?

나. 답변요지(도시정비국장 신수목)

현재 마포구 전체면적에 대한 상업지역은 1.1%이며 향후 도시기본계획변경시 늘릴것을 적극 건의하고 있으나 확실한 형편은 아님.

6. 토론요지

권오범위원:본회의에 부의할 것을 동의

7. 심사결과:본회의에 부의하기로 의결

8. 소수의견의 요지:없음

9. 심사결과 의견:별첨

노고산등 56번지일대 도시계획 용도지역 변경청원에 대한 의견서

본청원인들이 요구한 도시계획 용도지역 변경은 마포구청장이 서울특별시 및 건설부에 건의하여 청원인들의 기대를 충족시켜 주기를 요청함.

199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보고서

1992. 7. 20

예산결산특별위원회

1. 심사경과

가. 제출일자 및 제출자:1992년 7월 6일  
마포구청장 제출

나. 회부일자:1992년 7월 14일

다. 상정일자:제10회의회(임시회)

제2차위원회('92. 7. 15) 질의토론

제3차위원회('92. 7. 18)수정안 제안설명  
의결

2. 제안설명의 요지

(제안설명:정태연 총무국장)

가. 제출이유

199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승인하고자 함.

나. 주요골자

199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참  
조

3. 전문위원검토보고의 요지

(전문위원 김현기)

첫째, 추경편성의 요건은 본예산 편성시에 예견되었던 사업이나, 의회심의시 삭감된 예산 및 긴급을 요하지 않는 예산은 원칙적으로 추경예산에 반영하지 않는 것이 법취지에 맞는 것임.

이번 추경예산안에서는 이러한 취지에 대부분 부응하고 있으나 다소 미흡한 부분도 있으며, 향후는 본예산 편성시부터 추경편성을 전제로 하는 재정운용 방식은 지양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됨.

둘째, 정수물품의 취득은 지방재정법시행령 제113조 규정에 의거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은 다음에 예산에 반영하는 것이 원칙으로서, 추경예산안에 반영되어 있는 관련예산은 현재 취득승인요청안이 본회의에서 확정되지 아니한 상태인바, 향후 이러한 부분은 개선되어야 할 것임.

셋째, 이번 추경예산안중 지역개발사업비가 전체 예산의 67.4%인 62억원을 차지하고 있는바, 이는 전향적인 예산편성으로서, 지방자치시대에 부응하고 주민을 위한 정책의 일환으로서 바람직한 것으로 사료됨.

그러나 '92회계년도 하반기에 집중적으로 추진될 경우 예산의 이월등으로 효율성을 결여할 우려가 있으므로, 집행에 만전을 기해야 되리라 봄.

4. 질의 및 답변요지

○ 질의요지(김문태 위원)

여성단체 선진지 견학 경비를 당초예산에 편성하지 않고 추가로 편성한 이유

○ 답변요지(기획예산과장 김진택)

여성단체 선진지 견학 경비는 새마을연합회, 마을금고등은 기반영되었는데 여성단체는 편성이 안되어 반영하였으며, 그

목적은 각종 단체활동의 현황을 파악하여 좋은점을 활동에 참고하기 위함임.

○질의요지(윤명규 위원)

예산편성을 위한 기초자료 조사를 철저히 하여야 했다.

○답변요지(기획예산과장 김진택)

차후 기초자료를 철저히 조사토록 하겠음

○질의요지(유남렬 위원장)

새마을지도자관련 예산을 다른단체 예산과 형평이 맞게 편성되어야 할 것임.

○답변요지(기획예산과장 김진택)

관련부서와 협의 형평에 맞게 하겠음.

○질의요지(김문태 위원)

본예산에 편성되어야 할 예산이 추경에 편성된 사례가 많다.

○답변요지(기획예산과장 김진택)

차후 추경예산 편성시 불요불급한 예산을 추경에 편성하는 일이 없도록 하겠음.

5. 토론요지:없음

6. 수정안요지

가. 제출일자 및 제출자:1992. 7. 18 마포구청장

나. 수정이유

지방자치법 제118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한 1992년도 제1차 추경예산(안) 제1차 수정(안)

다. 주요골자

별첨

7. 심사결과:수정안가결

8. 소수의견의 요지:없음

9. 기타

'92年度 第1次 追更 豫算(안)

예산총칙

제1조(예산총괄)

1.1992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 총액은 83,157,073천원으로 한다.

2. 세입세출예산 명세서는 별첨 세입세출예산과 같다.

제2조(일시 차입금 한도) 1992년도 일반회계 일시 차입금 한도액은 2,494,712천원으로 한다.

제3조(계속비) 없음

제4조(채무부담행위) 없음

제5조(지방채) 없음

제6조(예산이용) 다음 경비의 부족이 생겼을 때에는 지방재정법 제38조 제1항의 단서 규정에 의하여 타과목에서 이용할 수 있다.

(단,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34조제1항의 1, 2,3호 제외)

1. 공무원 봉급(상여금 및 정액수당등)
2. 공무원 연금부담 및 의료보험 부담금
3. 공무원 명예퇴직 수당
5. 제세 공과금, 배상금
6. 차입금의 원리금
7. 재해대책 및 복구비

제7조(간주처리) 회계년도 중에 내시되는 자치단체에 대한 보조금, 교부금은 예산 승인된 것으로 간주처리한다.

## 일반회계세출예산관별조서

(마포구)

(단위: 천원)

과 목		예산액	기정예산	증 감
장	관항세항목			
총 계		83,157,073	73,891,800	9,265,273
1100	선 거 비	340,383	340,383	0
1200	의 회 운 영 비	926,640	848,799	77,841
2100	기 획 행 정 비	14,087,066	13,167,371	919,695
2200	내 무 행 정 비	17,234,071	16,546,132	687,939
2300	재 무 행 정 비	850,366	805,179	45,187
3100	부 지 사 업 비	9,878,206	9,618,530	259,676
3200	보 건 위 생 비	1,775,872	1,714,636	61,236
3300	환 경 부 지 비	10,162,016	9,714,773	447,243
4100	산 업 경 제 비	379,588	179,588	200,000
5100	건 설 사 업 비	19,106,689	13,227,106	5,879,583
5200	치 수 사 업 비	6,950,015	6,626,699	353,316
7100	민 방 위 비	253,676	236,712	16,964
8100	전 출 금	118,000	118,000	0
9100	예 비 비	1,094,485	747,892	346,593

## 일반회계세출예산항별조서

(마포구)

(단위: 천원)

과목	예산액	기정예산	증감
장관항세항목			
총계	83,157,073	73,891,800	9,265,273
1000 의회비	1,267,023	1,189,182	77,841
1200 의회운영비	926,640	848,799	77,841
1210 의회운영	309,383	275,698	33,685
1220 사무국운영	617,257	573,101	44,156
2000 일반행정비	32,171,503	30,518,682	1,652,821
2100 기획행정비	14,087,066	13,167,371	919,695
2110 기획관리	14,087,066	13,167,371	919,695
2200 내무행정비	17,234,071	16,546,132	687,939
2210 내무행정	1,870,206	1,684,534	185,672
2220 동행정지도	15,363,865	14,861,598	502,267
2300 재무행정비	850,366	805,179	45,187
2310 지방수입관리	850,366	805,179	45,187
3000 사회복지비	21,816,094	21,047,939	768,155
3100 복지사업비	9,878,206	9,618,530	259,676

과 목	예산액	기정예산	증 감
장 관 항 세 항 목			
3110 일반사회복지	5,132,781	4,908,601	224,180
3120 생활보호	4,484,592	4,451,256	33,336
3130 생활체육	260,833	258,673	2,160
3200 보건위생비	1,775,872	1,714,636	61,236
3210 보건관리	1,687,303	1,637,190	50,113
3220 위생관리	88,569	77,446	11,123
3300 환경녹지비	10,162,016	9,714,773	447,243
3310 환경위생	8,933,236	8,692,072	241,164
3320 공원녹지	1,228,780	1,022,701	206,079
4000 산업경제비	379,588	179,588	200,000
4100 산업경제비	379,588	179,588	200,000
4110 산업경제	379,588	179,588	200,000
5000 지역개발비	26,056,704	19,853,805	6,202,899
5100 건설사업비	19,106,689	13,227,106	5,879,583

과 목	예산액	기정예산	증 감
장 관 항 세 항 목			
5110 건설관리	18,015,039	12,266,686	5,748,353
5120 주택사업	324,516	318,445	6,071
5130 도시계획	767,134	641,975	125,159
5200 치수하수사업비	6,950,015	6,626,699	323,316
5210 치수하수사업	6,950,015	6,626,699	323,316
6000 교육및문화비	0	0	0
7000 민방위비	253,676	236,712	16,964
7100 민방위비	253,676	236,712	16,964
7110 민방위관리	253,676	236,712	16,964
8000 지원제비	118,000	118,000	0
8100 전출금	118,000	118,000	0
8110 전출금	118,000	118,000	0
9000 예비비	1,094,485	747,892	346,593
9100 예비비	1,094,485	747,892	246,593
9110 예비비	1,094,485	747,892	346,593